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형수 예산분석관
정금연 예산분석관
황진솔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송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자영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

II. 개별 사업 분석

- 1.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정책연구비 예산 조정 필요 8

[대통령경호처]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1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

II. 개별 사업 분석

- 1. 차량폐차 소요를 고려하여 기타잡수입 조정 필요 16

[국회]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2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

II. 개별 사업 분석

-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24

[국가인권위원회]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3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3

II. 개별 사업 분석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및 스포츠윤리센터 간 협의·조정을 통한 사업 중복성 해소 필요	34
---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4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9

II. 주요 현안 분석

- 1.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관련 문제점 50
 - 1-1.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검토 필요 54
 - 1-2.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부산투자자 ISDS 사건 대응 예산 편성 필요 57
- 2. 소년원생수용 사업의 문제점 59
 - 2-1. 소년원 수용인원 추이를 고려한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 편성 필요 60
 - 2-2.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직원 및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필요 63

III. 개별 사업 분석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시기를 고려한 운영 예산 편성 필요 69
2. 경비인력 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사업 예산 편성 필요 73
3. 검찰청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 편성 여부 재검토 필요 78
4. 검찰청의 안전가옥 사업 및 경찰청 임시안전숙소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 81
5. 시설보완 사업의 작업장 확충 관련 공사 예산의 적정 편성 및 교도작업 사업 관련 노역집행률 개선 필요 86
6.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비목 조정 필요 92

[법제처]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9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1

II. 개별 사업 분석

1.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02
2.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지속여부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필요 1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11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1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3

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14
 - 1-1 수사관련 위원회 비용 과다 계상 115
 - 1-2 형사보상금 지급 근거 미비 117

[감사원]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12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5

II. 개별 사업 분석

- 1.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의 유사중복에 따른 업무통합 필요 ... 126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13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6

II. 개별 사업 분석

1. 판사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법관 인건비 조정 검토 필요 138
2. 단신부임 근무자 철도운임 지원 부적정 143
3.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 집행 저조로 예산 조정 필요 146

[헌법재판소]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15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3

II. 개별 사업 분석

1. 헌법재판소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154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억 9,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02	297	297	297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002억 4,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1억 1,600만원(7.6%)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9,948	95,570	93,132	100,248	7,116	7.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되었고(2022년 639억원 → 2023년 642억원), ② 새정부 출범 및 코로나 안정에 따른 대외활동 증가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비는 증액되었다.(2022년 316억원 → 2023년 361억원)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운영관리,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이 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국민통합을 위해 소통행보를 강화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되었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2개)	국정운영관리	4,352	4,197	6,373	2,176	51.8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464	464	933	469	10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정책연구비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국정운영관리 사업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 국정운영 수행평가 등을 통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7,600만원이 증액된 6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정운영관리	3,341	4,352	4,197	6,373	2,176	51.8
정책연구비(260-02목)	24	500	473	500	27	5.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260-02목)는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이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2023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연구비(260-01목) 21억 9,400만원, 정책연구비(260-02목) 5억원이다.

[연구용역비 산출 근거]

국정운영 수행평가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정책과제 연구 용역 26억 9,400만원
- (일반연구비) 여론조사 경비 <u>17억 9,400만원</u> ,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u>4억원</u>
- (정책연구비) 정책과제 연구용역 <u>5억원</u>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이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94.5%)를 제외하고는 2018년도 62.9%, 2019년도 58.0%, 2021년도 12.0%에 머물렀다. 2022년 8월말 현재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20.5% 수준인 9,7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계약액,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추진 결정한 계약 예정액을 포함할 경우에도 정책연구비 집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정운영관리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300	300	-	-	-	300	189	62.9	-	111
2019	300	300	-	-	-	300	174	58.0	-	126
2020	200	200	-	-	-	200	189	94.5	-	11
2021	200	200	-	-	-	200	24	12.0	-	176
2022.8.	500	473	-	-	-	473	97	20.5	-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2년도 정책연구비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신규직원 충원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는 업무정상화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였다.

새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고려하면 2023년도에도 정책연구비 집행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균적인 집행 실적(최대 2억원 이하)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6,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00만원($\Delta 10.7\%$) 감소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1	75	75	67	$\Delta 8$	$\Delta 1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16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1,800만원(20.7%)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4,456	96,996	96,404	116,322	19,918	2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경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경호 인력·시설 확충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2022년 659.7억원 → 2023년 744.08억원), ② 경호환경 변화 및 경호위협요소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다(2022년 78.28억원 → 2023년 170.05억원).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기타잡수입의 수납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동일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누락된 차량폐차 소요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0억원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경호경비과학화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경호경비 장비 및 시설을 고도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경호경비과학화	1,000
합계		1,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경호장비 시설개선, 경호업무정보화 사업이 있다.

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 경호시설 장비, 전직대통령 경호시설장비 개보수 및 보완개선 위한 소요가 반영되었으며, ③ 경호업무정보화 사업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6,267	6,267	9,847	3,580	57.1
	경호장비시설개선	7,828	7,828	17,005	9,177	117.2
	경호업무정보화	3,310	3,310	4,432	1,122	33.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II

개별 사업 분석

1

차량폐차 소요를 고려하여 기타잡수입 조정 필요

가. 현 황

기타잡수입¹⁾은 폐탄피 및 폐탄두 매각, 수탁교육비 등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이 수납되는 것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타잡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잡수입	15	13	13	13 ²⁾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2) 세부내역 : 폐탄피 및 폐탄두 매각 등 1,100만원, 수탁교육비 200만원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기타잡수입의 수납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동일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누락된 차량폐차 소요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타잡수입의 최근 5년간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동일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부터 기타잡수입 예산으로 매년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20년 230.8%, 2021년 115.4%로 나타났다.

2020년 수납률이 230.8%로 증가한 것은 차량폐차비가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69-691

1,600만원(26대 폐차)이 추가 수납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임무 수행을 위해 경호 및 특수차량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차량을 폐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타잡수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8 ¹⁾	63	13	13	20.6
2019	63	11	11	17.5
2020	13	30	30	230.8
2021	13	15	15	115.4
2022(9월말)	13	-	-	-

주: 1) 외부기관 대상 교육진행에 따른 수탁교육비 납입고려 2018년~2019년 기타잡수입을 증액하였으나, 징수실적 미비로 2020년부터 감액편성

자료: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향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실제 세입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누락된 폐차 소요(9대 1,000만원)를 추가 반영하여 2023년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잡수입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의견]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안(A)	조정안(B)	증 감(B-A)	비 고
기타잡수입	13	23	10	2023년 차량폐차비 (9대, 1,000만원)반영

자료: 대통령경호처



국회

1

현황

국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39억 9,5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억 6,800만원(4.0%) 감소하였다.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30	4,163	4,163	3,995	△168	△4.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

국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7,166억 5,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8억 4,200만원(2.4%) 증가하였다.

[2023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41,844	703,841	699,809	716,651	16,842	2.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

한편, 국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2023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대국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이 확대되었고(정책 제안제도 운영 4억 4,100만원, 의정활동광고 1억 5,000만원,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 6억원, 국회방송운영 12억 2,400만원), ② 의회 차원의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방문·초청 및 국제 네트워크협력체계 구축 예산이 보강되었다(2022년 95억 1,700만원 → 2023년 122억 4,900만원).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TF 및 실무지원단의 활동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소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감사활동, 관리국 기본경비 등이 있다.

① 감사활동 사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법」에 따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원과 국회인권센터 활동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관리국 기본경비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감사활동	114	114	187	73	64.0
	관리국 기본경비	207	207	308	101	48.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가. 현 황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이 2021년 9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까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추진 경과]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홍성국·박완주·정진석의원안)
- 2021.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2021. 12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
(~2022. 6월)
- 2022. 2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2. 10월, 진행 중)

자료: 국회사무처

2020년 7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TF 및 실무지원단이 출범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실무 추진체계 수립 및 법안심사를 지원하고, 예산확보, 입지선정 등 필요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활동기간을 2021년 7월까지 계획하였으나, 「국회법」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년~미정
- 건립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 규모: 부지면적 631,000㎡, 건축연면적 미정(수립 중)



자료: 국회사무처

나. 분석의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TF 및 실무지원단의 활동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어, 2021년 본예산에 127억 2,7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연도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예산
일반연구비	-	-	-	-	-	-	-	1,788	-
기본조시설계비	1,000	0	1,000	0	11,727		-	-	-
실시설계비	-	-	-	-	1,000		-	-	-
합계	1,000	0	1,000	0	12,727		-	1,788	-

주: 2022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동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국회사무처에 분임재무관 등 분임회계관직을 지정¹⁾하여 국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 10월 초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²⁾’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 용역 검수를 마무리하여 11월 중에 보고할 예정

1)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집행 관련 국회사무처의 분임회계관직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회사무처 분임회계관직 지정현황]

위임범위	회계직명	지정관 직명
행특회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및 관련예산 집행	재무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
	계약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
	지출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지출담당
	국유재산관리관	국회사무처 관리과장

자료: 국회사무처

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및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전 범위 관련 국회규칙 제정 및 재정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 수행과 국회 이전 준비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소관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TF 및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기본 계획 수립, 국회규칙 제정 준비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 세부사업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규칙 제정 등 사업절차가 본격 진행될 경우 TF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인력을 기존 겸무 형태로 유지하기보다는 직제 개편 및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인력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TF 및 실무지원단의 활동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동 연구용역은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범위 도출 및 설치 효과를 분석하고 국회 분리 운영 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00만원(125%) 증가하였다.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9	12	12	27	15	12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406억 9,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억 6,700만원(4.3%) 증가하였다.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982	39,336	39,024	40,691	1,667	4.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13개 세부사업 중 6개의 세부사업이 2022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② 이 중, ‘인권의식 증진’ 세부사업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문화콘텐츠의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 1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③ ‘국제교류협력’ 세부사업에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를 위한 ‘국제인권조약 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④ 그 외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예산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④ 군 인권·이주 인권·아동 인권 등 취약분야 인권 증진을 위해 ‘취약분야 인권개선’ 예산을 2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와 이를 협의·조정하여 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인권의식 증진’ 사업으로, 인권문화 콘텐츠 시·청각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인권의식 증진	775	745	949	204	27.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II

개별 사업 분석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및 스포츠윤리센터 간 협의·조정을 통한 사업 중복성 해소 필요

가. 현황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¹⁾은 스포츠인권의 현 실태를 파악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권고를 통해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9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약분야 인권개선	1,162	1,234	1,186	1,455	269	22.7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115	179	171	102	△69	△40.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²⁾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초 스포츠 분야 ‘미투(me too)’를 계기³⁾로 폭력·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특조단을 설립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3-301

2) 2020년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사업으로 운영된 후, 2021년부터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3) 특조단은 2019년 빙상계를 통해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같은 해 1월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긴급성명을 통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2월 25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출범하였다.

하였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⁴⁾ 특조단의 운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 최초 설립된 이후 1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 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와 이를 협의·조정하여 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조단을 신설하여 스포츠 인권 실 태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⁵⁾에 근거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였는데, 동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내 다 원화되어 있던⁶⁾ 스포츠 인권 신고 및 상담창구를 통합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기간) 특조단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 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 등

양 조사기관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접수사건 조사 혹은 직권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업무나 조사 권한상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사후적 조치 측면에서, 특조단의 경우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체육단체나 교육청 등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한다는 점, 그리고 특조단은 정책권고 기능이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안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양 기관은 일부 조치 과정 및 권고 기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업무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분야 조사기관 비교]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스포츠윤리센터
성격	독립적 국가기관(법정부 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주요 업무	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 분야 인권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실행지침 수립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사 권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인권침해·비리 사건조사, 직권조사 등
조사에 따른 조치	인권위에서 직접 체육단체, 교육청 등 징계 요구 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문체부장관에게 징계 요구
정책권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책제안

주: 1)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거부방해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자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특조단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추진된 2019년에는 진정 123건이 접수되어 14건을 권고 조치하였으나, 2021년에는 진정접수 92건 중 권고 8건 등으로 진정접수 건수 감소에 따라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주요 활동 내역]

연도	사건조사	직권조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019	- 진정접수 123건 - 권고 14건, 조사중해결 13건	- 실태조사 (운동선수 및 체육계 인권상황 실태조사, 유도, 빙상종목 인권 특별조사 등) - 경기대회 모니터링(4대회)
2020	- 진정접수 107건 - 권고 18건, 고발 1건, 의견표명 3건, 합의종결 1건, 조사중 해결 3건	-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등에 대한 직권조사 - 실태조사 (스포츠분야 해외선진 제도 및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 경기대회 모니터링(4대회)
2021	- 진정접수 92건 - 권고 8건, 조사중해결 2건	- 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관습 직권조사 - 정책권고 이행상황 점검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3개기관),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19개 기관)) - 경기대회 모니터링(10대회)
2022.9	- 진정접수 30건 - 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조사중해결 3건	- 정책권고 이행상황 점검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0개 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42개 기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4개 기관),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개 기관)) - 경기대회 모니터링(8대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운영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투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추세 속에서 특조단이 설립되어 다양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종 경기대회 중단, 운동선수 집합 훈련 금지 등 체육계 활

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특조단의 인권증진 노력으로 인해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이 스포츠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형사건 또한 감소되는 추세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비리 등은 경기대회만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일상 속 잠재되어 계속 노정되는 문제라는 점,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⁷⁾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특조단의 운영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 운영방향을 재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조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구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역할 분담 및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7) 2022년 상반기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동기간(1~9월)에 비해 상담 건수는 35.3%, 신고 건수는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상담 755건, 신고 268건, 2022년: 상담 1,022건, 신고 325건)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상 담			신 고		
	2020 ¹⁾	2021	2022.9	2020 ¹⁾	2021	2022.9
총 건수	296	1,029	1,022	101	371	325

주: 1) 2020. 9월~12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4,15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5억원(0.7%)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3,458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48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3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334,503	1,420,468	1,420,468	1,410,649	△9,819	△0.7
- 일반회계	1,271,336	1,355,756	1,355,756	1,345,834	△9,922	△0.7
- 교도작업특별회계	63,167	64,712	64,712	64,815	103	0.2
기 금	4,824	3,998	3,998	4,342	344	8.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824	3,998	3,998	4,342	344	8.6
합 계	1,339,327	1,424,466	1,424,466	1,414,991	△9,475	△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조 2,28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58억원(1.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795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66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25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783,685	4,091,958	4,080,098	4,146,111	66,013	1.6
- 일반회계	3,718,929	4,025,084	4,013,475	4,079,549	66,074	1.6
- 교도작업특별회계	64,756	66,874	66,623	66,562	△61	△0.1
기 금	108,076	82,689	82,689	82,521	△168	△0.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8,076	82,689	82,689	82,521	△168	△0.2
합 계	3,891,761	4,174,647	4,162,787	4,228,632	65,845	1.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4,67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0억원(0.7%)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458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억원이다.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71,336	1,355,756	1,355,756	1,345,834	△9,922	△0.7
교도작업특별회계	114,370	121,571	121,574	121,479	△95	△0.1
합 계	1,385,706	1,477,327	1,477,330	1,467,313	△10,017	△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2,95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60억원(1.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1,73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억원이다.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24,983	4,119,284	4,107,675	4,173,749	66,074	1.6
교도작업특별회계	106,756	121,571	121,574	121,479	△95	△0.1
합 계	3,931,739	4,240,855	4,229,249	4,295,228	65,979	1.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원 (13.2%) 증가하였다.

[2023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7,873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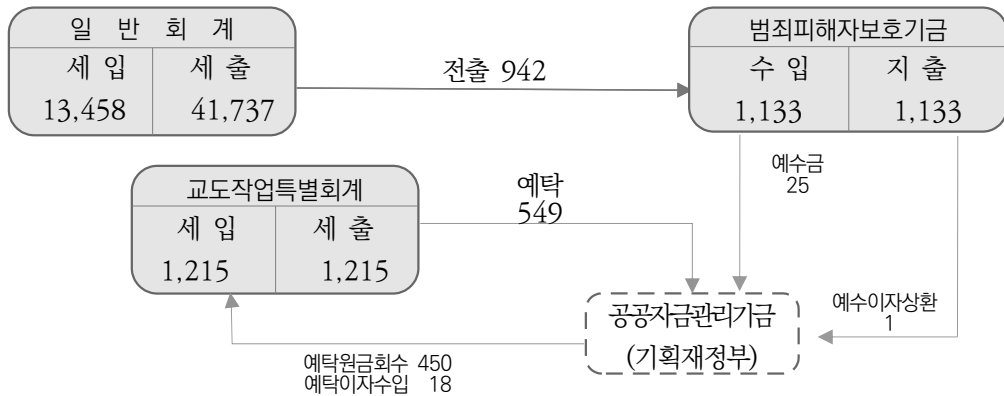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942억원이 전출된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49억원을 예탁하며, 예탁원금회수 45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18억원이 발생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942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원금 25억원 및 이자 1억원을 상환한다



주: 1. 총계기준
2. 단위: 억원
자료: 법무부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자감독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고(2022년 178억원 → 2023년 250억원), ② 영상증인신문 사업 실시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2년 338억원 → 2023년 398억원) 편성되었으며, ③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2022년 2,676억원 → 2023년 2,825억원), ④ 외국인 인권보호 및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2022년 1억원 → 2023년 124억원).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실제 준공 이후 운영 가능 기간보다 과도한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 일부 운용비 적용 산식에 있어서 실소요 면적 대비 과도한 면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은 2023년 출국대기실 입실자 및 경비인력에 대한 과도한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무부는 적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안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무부는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의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직원이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이동이 잦은 타 부처 및 세종시 이전 부처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에 대한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검찰청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은 2020년 이후 이용자가 없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피해자 등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높다는 점과 경찰청 소관의 유사사업의 경우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유사사업에 통합하거나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은 과다한 급식 인원수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무부는 소년원 수용인원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53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국가적·사회적, 업무 증거적 가치가 높은 법무 기록의 독자적 보존·관리 및 활용·서비스 등을 위한 법무부 기록관 건립('23. 9월 완공)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도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법무부 기록관 운영	5,323

자료: 법무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사업,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공판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다.

①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사업은 국가소송·행정소송 등의 직접 수행과 수행자에 대한 소송 지휘를 하는 것으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재개발 연구용역 및 SW 구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7,500만원(76.0%) 증액된 41억 1,200만원이 편성되고, ②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및 국적·난민업무 등 정보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3억 1,100만원 (40.9%) 증액된 25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공판활동지원 사업은 형사재판의 공소유지 지원 및 공판검사 역량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적극 대응을 위한 것으로, 공소유지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억 6,100만원(39.6%) 증액된 30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¹⁾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 분쟁(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4,100만원이 증액된 5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2,426	5,219	4,891	5,832	941	19.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부당 또는 위법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유치국을 제소하여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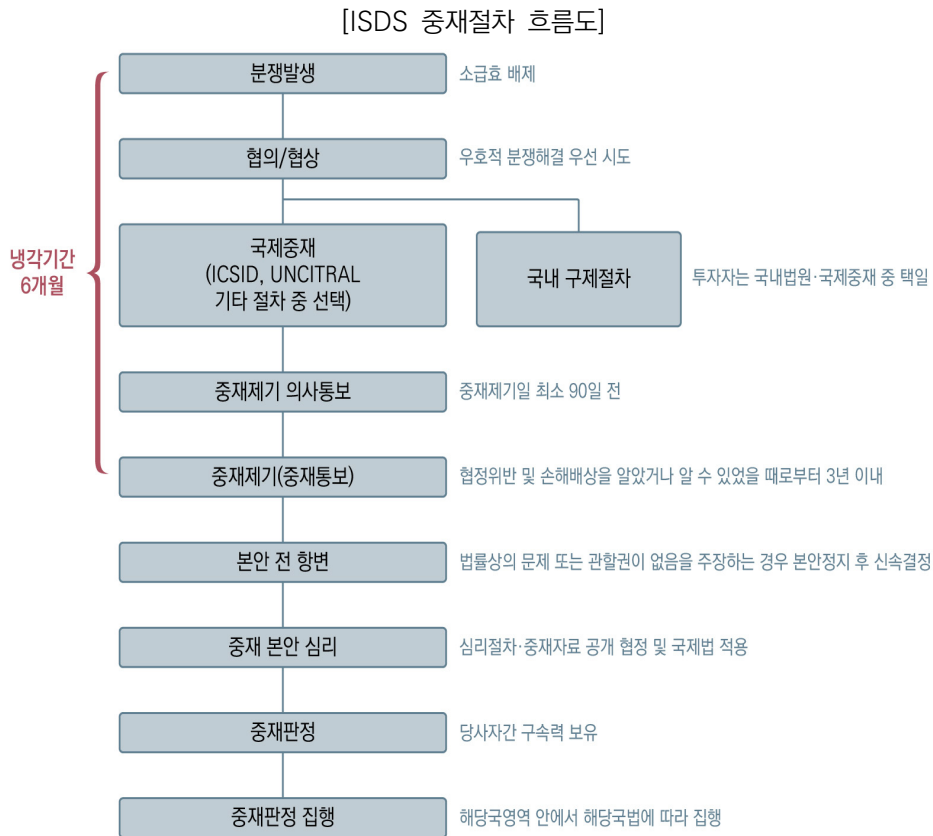
ISDS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별도로 규정됨으로써 각 당사자국에 적용되는데, 협약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투자자는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또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²⁾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8-202

2) 국제중재기관은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SCC(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ISDS 결과 중재기관이 피 청구국에 선고한 패소판정은 해당 사안의 분쟁당사자에게 효력을 갖게 되는데, 피 청구국이 패소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판정의 근거가 된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협약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자료: 법무부,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p.77

2022년 8월말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4건이 종료³⁾되고 6건이 진행 중이며, 중재 의향서는 접수되었으나 중재 제기 전인 사건이 6건이다.

Commerce, 세계 상공회의소) 등이 존재한다.

3) 다만, 론스타 사건은 2022년 10월 15일 판정문 정정신청, 이후 취소신청 등 후속절차 별도 진행 예정이다.

[2022년 8월말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현황]

주관 부처	제기자	청구일 및 근거협정	문제삼는 조치 (상대방의 주장)	청구액	현황
법무부	론스타	2012.11.21. 한-벨 BIT	-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 국세청의 관련 과세	46.8억 USD (약 6.3조원)	일부 패소 ⁴⁾
국세청	하노칼	2015.4.30. 한-네덜란드BIT	국세청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과세	2.5억 USD (3,375억원)	종료 (취하)
금융위	다야니	2015.9.14. 한-이란BIT	금융위의 KAMCO를 통한 대우일렉 주 식 매매 계약금 몰취	935억원 (한화 청구)	패소 ⁵⁾
법무부	엘리엇	2018.7.12.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7.7억 USD (1조 395억원)	진행중
법무부	미국 투자자	2018.7.12. 한-미FTA	국토부 등의 서○○ 소유 주택 수용	300만 USD (40.5억원)	승소 ⁶⁾
법무부	메이슨	2018.9.13.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2억 USD (2,700억 원)	진행중
법무부	싌들러	2018.10.11. 한-EFTA부속협정	금융위/금감원의 현대엘리베이터 부당 유상증자 방지	1.9억 USD (2,565억 원)	진행중
법무부	중국 투자자	2020.7.18. 한-중 BIT	-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 민·형사법원의 부당한 재판	1.5억 USD (2,025억원)	진행중
법무부	부산 투자자	2021.5.7. 한-미FTA	재개발에 따른 수용	547.5만 USD (73.9억원)	진행중
법무부	다야니 (2차)	2021.10.18. 한-이란BIT	다야니 1차 ISDS에 대한 배상금 미지 급	1억 USD (1,350억원)	진행중

주: 1달러=1,350원 기준

자료: 법무부

4) 2022.8.31. 중재판정부는 우리 금융당국이 론스타 및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11년 한-벨·룩 BIT 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하였음을 인정, 미화 2억 1,6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기타 금융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동 사건은 판정문 정정 신청, 이후 취소신청 등 후속조치 진행 예정이다.

5) 2018.6.6. 중재판정부는 채권단의 일방적인 주식채권매매 계약 해지 및 청구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 거부 등은 청구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한-이란 투자협정 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여, 한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몰취계약금+이자+중재비용 등)을 다야니 측에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6) 2019.9.28. 중재판정부는 ①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며, ②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판정을 하였다.

[2022년 8월말 현재 중재의향서는 접수되었으나 중재 제기 전인 ISDS 사건 현황]

주관 부처	제기자	접수일 및 근거협정	문제삼는 조치 (상대방의 주장)	청구액	현황
법무부	캐나다 투자자	2019. 5. 23. 한-캐나다FTA	국토부 등의 부동산 수용	300만 USD (40.5억원)	정식중재 제기전
법무부	게일	2019. 6. 20. 한-미FTA	인천시·인천경제청의 부당한 계약 체결 및 기부채납 강요, 포스코와 공모에 의 한 지분상실 등	20억 USD (2조 7천억원)	정식중재 제기전
법무부	버자야	2019. 7. 17. 한-말레이시아BIT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관련 소송 미고지 -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	4조 4천억원 (한화로 청구)	합의 종결
법무부	미국 투자자	2020. 1. 2. 한-미FTA	법원의 사법 거부 (무변론 판결 법리 오적용)	2억원, 10억USD (일반/특별손해)	정식중재 제기전
법무부	원주 투자자	2020. 2. 4. 한-미FTA	국토부 등의 부동산 수용	150억원 이상	정식중재 제기전
법무부	이란중 양은행	2021. 9. 22. 한-이란BIT	미국의 대이란제제에 따른 한국 정부 규제로 예금 송금 불가능	약 9조 4,500억원 (약 70억 USD)	정식중재 제기전

주: 1달러=1,350원 기준

자료: 법무부

우리 정부는 2019년 4월 5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⁷⁾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선들러 사건부터는 ISDS 대응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4조(대응단의 구성 등) ① 대응단은 단장,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응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겸임한다.

③ 대응단의 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2. 기획재정부
3. 외교부
4. 산업통상자원부

④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은 분쟁관계기관(제3항 각 호의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분쟁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1.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 검토 필요

가. 현 황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99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 479억 6,500만원 중 458억 5,600만원(95.6%, 2022년은 8월말 기준)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론스타 ISDS 대응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3	'14	'15	'16	'17	'18~'19	'20	'21	'22	합계
본예산	3,960	5,905	11,234	3,438	1,814	-	1,226	1,226	1,133	29,936
예산현액	4,768	10,589	22,368	4,882	1,814	-	1,226	1,185	1,133	47,965
집행액	7,857	10,553	22,364	4,880	705	-	1,185	1,185	227	45,856
집행률	99.8	99.7	100.0	100.0	38.9	-	96.7	100.0	20.0	95.6

자료: 법무부

동 사건은 2012년 5월 22일 중재의향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정부대리로움을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 중재 제기 이후 중재판정부 구성, 서면 심리, 구두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이 선고되고 9월 28일 판정문이 공개되었다.

나. 분석의견

정부는 최근 중재판정이 선고된 론스타 ISDS 사건에 대하여 판정문 정정을 신청하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바, ISDS 사건의 중재판정 이후 대응 절차 및 판정금 지급방식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925억원, 환율 1,350원 기준)와 이에 따른 이자⁸⁾를 지급하라고 판정(2022년 8월 31일)하였다.

이와 같은 일부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에 대하여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서를 제출(2022.10.15.)⁹⁾하고 동 판정 관련 취소신청(판정 선고 후 120일¹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도 론스타 ISDS 관련 정부의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며, 판정문 정정절차(3개월~1년) 및 판정 취소절차(1~2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론스타 ISDS 관련 법률자문비용, 중재절차 참여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판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금 지급 방식과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론스타 ISDS 관련 배상금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인정되어 2019년도 국가배상금지급 사업(일반회계, 1031-301)에 배상금 1,000억원이 편성된 바가 있는데, 법무부는 중재판정 배상금이 국가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어떤 사업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¹¹⁾¹²⁾

8)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명한 'average one-month U.S. Treasury rate'에 따른 이자배상 결정은 2억 1,650만 달러의 판정배상금에 이자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매일 변동하는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연간 평균 이자율을 각 시점에 적용하여 연복리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완제일 전에는 총 소요예산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2022년 8월 29일 기준으로는 13,633,475 미달러(약 184억원, 환율 1,350원 기준)로 계산된다.

9) 정부가 정정신청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12.3. 이전인 2011.5.24.부터 2011.12.2.까지의 이자액 20만 1,220달러가 포함되어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② 배상원금에는 2011.12.3.부터 2013.9.30.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된다.

10) 동 기한은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후 진행된다.

11) 국가배상금지급 사업(일반회계, 1031-301)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중재판정 관련 배상금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론스타 중재판정 관련 배상금 편성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이 중재판정이 선고되고 정부는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 등의 후속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향후 중재판정 선고 이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¹³⁾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ISDS 사건의 중재판정 이후 대응절차 및 판정금 지급방식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또한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인 다야니 사건 1차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약 73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의 판정(2018.6. 판정, 2019.12. 최종 확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외화 송금 제재로 배상금 지급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야니 측은 2차 ISDS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법무부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022년 1월 미 당국과의 협의 결과, 다야니 ISDS 배상금 지급을 위한 대이란 외화 송금이 허용되었으며, 2022년 4월 합의서 체결 후 배상금(약 760억원) 중 약 622억원을 송금하였다.

13) 법무부는 판정금 재원 마련이 필요해지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세계잉여금, 예비비, 본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1-2.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부산투자자 ISDS 사건 대응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ISDS 대응 관련 2023년도 예산안으로 선들러 사건 14억 3,400만원, 중국투자자 사건 19억 2,200만원, 부산투자자 사건 5억 1,200만원, 다야니(2차) 사건 6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진행 중 ISDS 대응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건명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선들러 사건	3,017	1,602	1,602	1,434	1,434
중국투자자 사건	-	1,922	1,922	1,922	1,922
부산투자자 사건	-	-	-	512	512
다야니(2차) 사건	-	-	-	-	608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부산투자자 사건의 경우 절차 중지 또는 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1년 5월 부산투자자(미국)는 본인 소유 부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부산시의 위법한 부동산 수용 행위로 약 미화 537만 달러(한화 약 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다.

2022년 본예산에 처음 편성된 부산투자자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 작년 연말 청구인 측 대리인이 사임한 이후 절차 진행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8월 말 까지 집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5억 1,200만원 중 3억 2,800만원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되어, 현재 예산현액은 1억 8,400만원이다.

[부산투자자 ISDS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2년 추경	2022년 집행액
부산투자자 사건	512	184	0

자료: 법무부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절차 중지 또는 지연이 발생하면 신들러 사건¹⁴⁾의 2019년(25.3%), 2021년(8.1%)과 같이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투자자 사건 청구인 측 대리인의 사임 이후 절차 진행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구성되지 않았고 타 ISDS 사건과 달리 2023년 예정된 일정도 통지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투자자 사건 관련 ISDS 예산안 규모는 중재사건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1억 8,400만원(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 수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신들러 ISDS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2022 추경	2023 예산안
일반수용비(210-01목)	국내로펌 법률자문 비용, 행정비용 등	125	423
국외업무여비(220-02)	정부대응단 및 증인 중재절차 참여	54	84
사업추진비(240-01)	관련 전략회의 등	5	5
합 계		184	512

주: 2022년도 집행액의 경우 8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14) 연도별 신들러 ISDS 예산 및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신들러 ISDS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	3,017	2,863	723	25.3
2020	1,602	3,742	3,537	94.5
2021	1,602	1,533	124	8.1
2022	1,434	1,434	163	11.4

주: 2022년도 집행액의 경우 8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소년원생수용 사업¹⁾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 등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8,700만원이 증액된 2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소년원생수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년원생수용	20,761	23,518	23,373	24,560	1,187	5.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교과과정, 직업훈련과정, 치료재활교육과정, 인성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소년원 기관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 ② 소년원생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및 귀주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구호 및 교정비’, ③ 소년원 공무원을 보조하여 소년원생 수용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무원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인력지원’, ④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이다.

법무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 75억 8,800만원, 구호 및 교정비 56억 1,100만원, 공무원 등 인력지원 83억 1,000만원, 출원생 자립지원 3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2-300

2-1. 소년원 수용인원 추이를 고려한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²⁾에 따르면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여 보호소년이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법 제17조³⁾는 보호소년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도 소년원생수용 사업의 내역사업인 구호 및 교정비 사업에서 소년원생 급량비 43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원생에 대한 급식비 뿐만 아니라 특식가산, 간식비 등을 포함한다.

[2023년도 소년원생 급량비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정기준	편성액
소년원생 급식비	1,510명 × 6,948원 × 365일	3,829
경축일 특식가산	1,510명 × 2,000원 × 10회	30
외부행사 지원 소년원생 특식가산	26명 × 2,000원 × 249일	13
수험생 특식가산	964명 × 2,000원 × 210일	405
대회출전 등 외부활동 간식비	11기관 × 220명 × 6,000원	15
입산부 등 환자식 가산	34명 × 3,000원 × 365일	37
합 계		4,329

자료: 법무부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급여품 등) ② 보호소년등에게는 주식, 부식, 음료, 그 밖의 영양물을 제공하되, 그 양은 보호소년등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발육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

나. 분석의견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은 과다한 급식 인원수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무부는 소년원 수용인원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생 급량비의 대부분(88.4%)을 차지하고 있는 소년원생 급식비는 급식 인원수와 급식비 단가 및 급식 일수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는 급식비의 경우 급식 인원수 1,510명, 급식 단가 6,948원, 급식 횟수 365일을 적용하여 38억 2,900만원을 편성⁴⁾하였다.

[연도별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원, 명, 일,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급식비 단가	5,409	5,680	6,242	6,554	6,948
급식 인원수	1,603	1,510	1,510	1,510	1,510
급식 일수	365	365	365	365	365
급식비 예산	3,165	3,131	3,440	3,612	3,829

자료: 법무부

소년원생 급식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하기 위하여, 급식 인원수의 경우는 소년원의 보호소년 평균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2019년과 2020년도 급식 인원수 1,603명 및 1,510명의 경우 각각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수	1,612	1,510	1,342	1,261	1,066

주: 소년원의 정원은 총 1,350명임

자료: 법무부

4) 2019년 이후 급식비 단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0년 이후 급식 인원수는 1,510명으로 고정됨에 따라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은 2020년 31억 3,1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급식 인원수를 전년과 동일한 1,510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여 2021년도 소년원 평균 수용인원은 1,066명에 불과하다는 점, 동 시설의 정원은 1,3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 인원수 기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⁵⁾

[소년원생 급식비 예산규모 수정]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산식	'23년 예산규모
법무부 편성 기준	1,510명 × 6,948원 × 365일	3,829
수용정원 기준	1,350명 × 6,948원 × 365일	3,424
2021년말 실제 평균 수용인원 기준	1,066명 × 6,948원 × 365일	2,7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임시퇴원 활성화 등의 조치가 종료되어 수용인원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내년도 예상되는 수용인원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병 급식비 인상 등 타 국가시설의 급식 단가 인상 논의가 있었다는 점⁶⁾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식비 단가 관련 논의를 통하여 급식비 예산 소요를 적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별조치(임시퇴원 활성화 및 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수용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다.

6) 구체적으로, 소년원 급식비는 2023년도 정부안 기준 6,948원(1식 2,316원)으로 군장병 급식비 13,000원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군장병 급식비의 71% 수준이었다.

[최근 국가시설 1일 급식비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안)
소년원 급식비	6,242원	6,554원	6,948원
군장병 급식비	8,790원	13,000원	13,000원
비 중(%)	71.0	50.4	53.4

자료: 법무부

2-2.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직원 및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⁷⁾은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된 3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출원생 자립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년원생수용	20,761	23,518	23,373	24,560	1,187	5.1
출원생 자립지원	3,187	3,155	3,155	3,051	△104	△3.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동 사업은 ① 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②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소년보호협회⁸⁾에 보조금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화성·안산의 2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의왕·대전·부산·광주·대구·안양·전북·강원의 8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7) 코드: 일반회계 1632-300의 내역사업

8)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1998.12.)된 재단이다. 주요 사업은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8개)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2개) 운영, 희망드림사업 운영(주거, 창업, 취업, 장학, 원호 등), 창업보육기업 운영 및 지원이다.

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분석의견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년원 출원생 등의 사회정착이라는 목표 달성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및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란 소년원 출원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 등 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 1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하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기술교육센터이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①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이하 “화성센터”)와 ②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이하 “안산센터”)가 있으며, 화성센터의 경우 남자인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5개 학과의 기숙형 종합기술교육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안산센터는 여자인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4개 학과의 비기숙형 미용 전문 기술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화성·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구 분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개 원	2014년 12월	2020년 2월
설립목적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정착 유도	
대 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남자 청소년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여자 청소년
교육내용	① 직업훈련 기술교육, ② 인성교육, ③ 현장체험학습	
학 과	골프매니지먼트과, 용접과, 자동차정비과, 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과	헤어미용반, 네일아트반, 피부미용반, 메이크업반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5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54
기숙여부	기숙형	비기숙형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3년도 화성센터 운영을 위하여 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화성센터의 경우 인건비는 교사 14명 및 기능직 2명을 기준으로, 주요사업비는 소년원 출원생 등 약 3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산센터의 경우 인건비는 직원 3명을 기준으로, 주요 사업비는 강사 2명 및 소년원 출원생 등 약 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내용	금 액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1,113,105
- 인건비	직원 16명(교사 14명, 기능직 2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	676,407
- 주요사업비 ¹⁾		436,698
1) 교육실습재료비	30명 × 8,3000원 × 6월	14,940
2) 식비	40명 × 8,000원 × 206일	65,920
3) 특식 및 간식비	30명 × 4,000원 × 12월 × 6회	8,640
4) 침구 및 피복비	30명 × 250,000원 × 1세트	7,500
5) 교통비	30명 × 10,000원 × 12월	3,600
6) 자립지원비	18명 × 300,000원 × 4회	21,600
7) 의료비	30명 × 50,000원 × 2회	3,000
8) 창업지원비	2명 × 2,500,000원	5,000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242,281
- 인건비	직원 3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	116,256
- 주요사업비 ¹⁾		126,025
1) 강사료	2명 × 3시간 × 40,000원 × 220일	52,800
2) 실습비	20명 × 84,770원 × 12월	20,345
3) 급식비	20명 × 6,000원 × 220일	26,400
4) 실습복	20명 × 40,000원	800
5) 자립지원비	20명 × 300,000원 × 2회	12,000
6) 의료비	20명 × 7,000원 × 12월	1,680

주: 1) 아래 세부 내역은 각 센터의 주요사업비 일부만을 작성함
자료: 법무부

그러나, 각 센터의 직원 및 소년원 출원생 등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화성센터의 직원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7명이며, 소년원 출원생 등의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5명이다. 안산센터의 경우에는 직원 정원 3명에 현원은 3명이며, 소년원 출원생 등의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1명이다. 두 센터 모두 직원 및 소년원 출원생의 현원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이다. 2021년도의 경우 화성센터는 2억 200만원을, 안산센터는 1,300만원을 반환하였다.

[연도별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정원·현원 현황]

연도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직원		소년원 출원생 등		직원		소년원 출원생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9	20명	20명	40명	25명	-	-	-	-
2020	20명	18명	40명	16명	3명	3명	20명	12명
2021	20명	10명	40명	6명	3명	3명	20명	8명
2022	20명	7명	40명	5명	3명	3명	20명	11명

주: 각 연도 연말 기준이며, 2022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직원 및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전국 소년원 등 유관기관 출입이 통제되어 소년보호협회 사회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¹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외부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은 정원에 못 미쳤다는 점, 법무부에서 직접 소년원에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10)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동 사업의 경우 소년원 초기 입원 단계에서부터 협회 직원과 소년원 담당자가 협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사전에 파악·접촉하고, 소년원 재원기간 중 라포(유대관계) 형성 등을 통해 출원 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대면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 수용 시설인 소년원 출입이 전면 통제되어 대면 홍보가 불가능해지면서, 협회에서 소년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홍보문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원 출원생 등의 감소는 감염병의 유행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생 등이 센터에 입소할 유인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존에 각 센터는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소년원 출원생 등의 수가 감소한 후로 학과별 경계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¹¹⁾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각 과의 교육기간이 1년 과정이라는 점과 소년원 출원생 등의 입교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상시적으로 입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체제 하에서는 소년원 출원생 등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센터의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의 경우 소년원 출원생 등의 자퇴인원은 화성센터는 16명, 안산센터는 17명으로 센터의 교육생 현원을 고려할 때 많은 인원이 자퇴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의 취업실적은 화성센터는 0명, 안산센터는 3명으로 소년원생의 자립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아래는 화성센터의 각 학과별 평균 수용인원 현황이다. 안산센터의 경우 뷰티학과(네일아트·메이크업)와 스킨케어학과(피부미용·헤어미용)로 나뉘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교육기간 및 특성,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4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각 학과별 평균 수용인원]

(단위: 명)

구 분	자동차정비과	용접과	골프 매니지먼트과	커피 바리스타과	제과제빵과
2019	6	8	5	4	4
2020	3	6	4	4	3
2021	11				
2022.6.	6				

주: 2020년 10월부터 교육생이 희망하는 교육과목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학과 중심에서 담임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목별 현원은 별도로 없음

자료: 법무부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실적 및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화성센터		안산센터	
	자퇴 인원	취업 인원	자퇴 인원	취업 인원
2019년	10	7	-	-
2020년	11	10	9	3
2021년	16	0	17	3

주: 1. 자퇴인원은 퇴교자 중 퇴교사유가 '자퇴'인 소년원 출원생 등 수의 (당해연도)누계

2. 취업인원은 각 연도 취업에 성공한 소년원 출원생 등 수

자료: 법무부

따라서,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소년원 출원생 등의 현원 및 보조금 반환 현황을 고려할 때 2023년도 예산안은 소년원 출원생 등 및 직원¹²⁾의 수 기준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인 인원수 예측에 근거하여 예산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특히 화성센터의 경우 교사 수요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과다한데, 이는 화성센터의 직원의 정원을 소년원 출원생 등의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성센터는 교사를 외부강사로 개편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산센터의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주요사업비로 편성)을 편성하고 있다. 안산센터의 경우 화성센터에 비하여 강사(교사)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시기를 고려한 운영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¹⁾은 국가적·사회적·업무 증거적 가치가 높은 법무기록의 독자적 보존·관리 및 활용·서비스 등을 위한 법무부 기록관 건립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도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53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무부 기록관 운영	-	-	-	5,323	5,323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실제 준공 이후 운영 가능 기간보다 과도한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 일부 운용비 적용 산식에 있어서 실소요 면적 대비 과도한 면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법무부 기록관 건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무부 기록관 신축 사업²⁾에 따른 기록관 완공 이후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39-302

2)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2431-992

당초 계획에 의하면 법무부 기록관 신축 사업의 경우 2022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잦은 공사 지연 발생으로 인하여 준공시기는 2023년 8월 9일(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준)로 연장³⁾되었다.

따라서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예산의 경우, 2023년 8월 준공을 기준으로 5개월간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5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존서고의 이동식 서가 및 보존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9억 7,800만원, 열람 및 전시 시설 시공을 위한 건설비로 3억 1,500만원, 보존처리 소모품 구입 및 보존장비 유지, 보존처리 작업을 위한 운영비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3) 당초 2020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착공이 지연되고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약 1년 정도 착공이 지연되었다. 착공 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이 발생했으며, 2023년 예산안 편성 시점 기준으로 준공 시기는 2023.8.9.로 연장되었다.

[법무부 기록관 신축 사업 계획 및 실제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기본설계	2018.1.~2018.12. : 기본설계(총사업비 협의)	2018.12. :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2019.5. : 기본설계 종료 2019.10. : 총사업비 1차(기본설계) 조정
실시설계	2019.1.~2019.12. : 실시설계(총사업비 협의)	2019.5. : 실시설계 착수 2019.12.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0.9. : 총사업비 2차(실시설계) 조정
공사	2020.1.~2022.12. : 공사 2022.12. : 준공 및 입주	2020.12. :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 2021. : 사토장 확보 관련 등 공사지연 2023.8. : 준공

자료: 법무부

[법무부 기록관 신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						
2018	665	-	665	-	665	1	0.2	621	43
2019	999	-	999	621	1,620	1,077	66.5	500	44
2020	12,881	△12,450	431	500	931	628	67.5	302	0
2021	13,364	△5,428	7,936	302	8,238	4,969	60.3	3,268	1
2022	18,567	-	18,567	3,268	21,835	4,223	19.3	-	-

주: 202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2023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세부 산출 내역	
자산 취득비	3,978	2,007	자산취득비(430-01): 보존서고(2층 임시서고, 3층 임시서고 및 특수매체서고, 4층 보존서고 등)의 이동식 서가 구입
		1,971	자산취득비(430-01): 등록분류평가실, 디지털변환작업실, 소독탈산실, 마이크로필름작업실 등의 보존장비 구입
건설비	315	공사비(420-03): 기록물 열람 및 세미나실 시공, 전시·민원 시설 시공	
운영비	1,030	285	①일반수용비(210-01): 보존처리 소모품 구입 * 40만권(연간 이관대상량) × 17,100천원(검찰 1만권당 단가) × 5월/12월(완공시기 고려) = 285,000천원
		195	②시설장비유지비(210-09): 향온향습 등 보존장비 유지 * 18,031㎡(기록관 연면적) × 40천원(검찰 1㎡당 단가) × 5월/12월(완공시기 고려) = 300,516천원 (단, 5개월 중 시운전 기간 2개월 제외) = 195,000천원
		550	③일반용역비(210-14): 이관, 정리, 전자화 등 보존처리 작업 * 40만권(연간 이관대상량) × 66,000천원(검찰 1만권당 단가) × 5월/12월(완공시기 고려)=1,100,000천원 (단, 8월 완공 후 사업발주 및 계약 소요기간 2.5개월 제외) = 550,000천원
합 계	5,323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화물연대 파업 및 레미콘 생산중단 등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불안정(공급취소 등)으로 골조공사 지연⁴⁾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준공일은 2023년 8월 9일에서 2023년 9월 16일로 연장⁵⁾되었고, 이에 따른 법무부 기록관 운영 가능 기간은 3.5개월로 단축되었다.

또한, 2020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9월까지 공정률이 21.3%에 불과하다는 점, 골조공사 지연이 해결되지 않거나 동절기 공사 중지⁶⁾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 2022년 9월 27일 기준 공정률은 21.3%이다.

5) 또한 준공 이후 개관에 따른 준비 작업으로 약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개관은 2023년 10월, 시운전 계획은 2023년 8월부터 10월 예정이다.

6) 2022년 초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준공시기가 55일 연장되었다.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기록관 운영 가능 기간을 5개월로 잡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국가형사사법기록관과 동일한 단가(기록관 연면적 1m²당 단가 4만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23년도의 경우 법무부 기록관의 실제 운영면적⁷⁾을 고려할 때 기록관 연면적(18,031m²)을 기준으로 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운영비 수정 산출 내역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세부 산출 내역	
운영비	486.3	199.5	① 일반수용비(210-01): 보존처리 소모품 구입 * 40만원(연간 이관대상량) × 17,100천원(검찰 1만원당 단가) × 3.5월/12월(완공시기 고려) = 199,500천원
		66.8	② 시설장비유지비(210-09): 향온향습 등 보존장비 유지 * 10,014㎡(운영면적) × 40천원(검찰 1㎡당 단가) × 2월/12월(완공시기 고려) = 66,760천원 (시운전 기간인 8월~10월 제외)
		220	③ 일반용역비(210-14): 이관, 정리, 전자화 등 보존처리 작업 * 운영기간 3.5개월에서 사업발주 및 계약 소요기간 2.5개월 제외함을 고려할 때, 1개월분만 반영 필요 * 40만원(연간 이관대상량) × 66,000천원(검찰 1만원당 단가) × 1월/12월 = 220,000천원

주: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해당 표에서는 기록관 연면적을 조정(2023년에 미사용 예정인 서고 5층~7층 면적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법무부

종합하면,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실제 준공 이후 운영 가능 기간보다 과도한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 일부 운용비 적용 산식에 있어서 실소요 면적 대비 과다한 면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7) 구체적으로, 5층~7층 서고의 경우 2023년에는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이관되는 자료의 경우 4층의 보존서고에서 수용할 예정으로, 5층~7층 서고의 경우 2023년에는 이동식 서가 구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경비인력 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사업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사업¹⁾은 송환대상외국인²⁾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인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 1,000만원이 증액된 3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39,824	43,843	43,843	48,462	4,619	10.5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	134	134	3,344	3,210	2,295.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기준에는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출국대기실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운영 주체를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³⁾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사업이 2022년부터 신규로 시행되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232-300의 내역사업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은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 ①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② 상륙 허가를 받아 상륙한 승무원 또는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제16호 규정에 “출국대기실”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분석의견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은 2023년 출국대기실 입실자 및 경비인력에 대한 과도한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무부는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안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①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내역사업으로 2023년에 신규로 고용하는 경비인력 40명 등에 대한 인건비와 출국대기실 입실자인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구호 및 교정비, 일반수용비 등 (이하 “출국대기실 운영비용”)을 편성하고 ② 공무원근로자 운영 내역사업으로 2022년에 고용한 경비 인력 15명에 대한 2023년도 인건비를 편성하여, 총 3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상용임금	1,103,200	보수: 40명×2,075천원×12월 = 996,000천원 명절휴가비: 40명×1,100천원 = 44,000천원 정액급식비: 40명×140천원×12월 = 67,200천원
	복리후생비	20,000	맞춤형복지비: 40명×500천원
	고용부담금	215,271	4대보험료 및 퇴직금: 1,103,200천원×19.51%
	피복비	16,000	40명×400천원
	일용임금	45,947	10명(5개공항)×9,620×209시간×12월×19%
	일반수용비	56,881	통역비: (입실자 74,121명×0.84기준) 20,048천원 수용경비: (입실자 74,121명×0.84기준) 36,832천원
	임차료	821,814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확장: 1,184m ² ×694,100원
	구호 및 교정비	1,065,392	매식비: 74,121명×0.84×6,242원×3식×0.88 = 1,026,002천원 의료비·침구비: 203명×0.84×231천원 = 39,390천원
공무직 근로자 운영	상용임금	415,200	보수: 15명×2,075천원×12월 = 373,500천원 명절휴가비: 15×1,100천원 = 16,500천원 정액급식비: 15명×140천원×12월 = 25,200천원
	복리후생비	7,500	맞춤형복지비: 15명×500천원
	고용부담금	81,005	4대보험료 및 퇴직금: 415,200천원×19.51%
	피복비	6,000	15명×400천원
합 계		3,854,210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 소요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인 ① 2023년도 출국대기실 입실자 기준, ② 출국대기실 경비 형태 관련 경비인력 기준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3년도 출국대기실 입실자 수는 법무부의 편성 기준에 따라 기존의 6.2만명(74,121명×0.84)이 아닌 5.2만명(74,121명×0.701)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당초 법무부의 편성 기준에 따른 2023년도 출국대기실 입실자 수는 2019년도 출국대기실 입실자 74,121명을 기준으로 하여 ICAO(유엔민간국제항공기구) 통계 전망(2022.6.10. 발표)에 따라 2023년도 코로나 회복률 84%를 곱한 값이다.

[연도별 출국대기실 입실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출국대기실 입실자	50,271	48,604	74,121	10,525	94	4,467

자료: 법무부

그러나 ICAO 통계 전망 최신 발표(2022.9.12.)에 따르면, 코로나19 회복률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기준값(2022.6.10. 발표)인 83.3% ~ 94.3% 대비 약 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회복률은 70.1% ~ 79.4%로 나타났다.

[ICAO 통계 전망에 따른 코로나19 회복률]

(단위: 명, %)

구 분	'19년(A)	'19년 대비 '22년 4분기 예측(B)	B/A	코로나19 회복률
ICAO 통계 전망 (2022.6.10.발표)	438,303	△73,223 ~ △24,964	△16.7 ~ △5.7	83.3 ~ 94.3
ICAO 통계 전망 (2022.9.12.발표)		△130,914 ~ △90,109	△29.9 ~ △20.6	70.1 ~ 79.4

자료: ICAO, 「Effects of Novel Coronavirus(COVID-19) on Civil Aviation: Economic Impact Analysis」, 2022.6.10. 및 2022.9.1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법무부의 출국대기실 입실자 수를 추산하면 약 5.2만명 정도가 산출되며, 법무부의 기준 6.2만명 대비 약 1만명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경비인력 소요를 산출하면서 근무체제 및 경비 목적이 유사한 외국인보호실의 경비인력 소요(2인 1조) 대비 과다하게 인력 소요를 산출(3인 1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관련 예산을 산출하기 위하여 근무체제 및 경비 목적이 유사한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을 비교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경비인원을 4.42명으로 산출하면서도, 2인 1조로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실 경비 형태와 달리 출국대기실은 추가소요를 고려한 3인 1조⁴⁾(1.5배)를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출국대기실 관련 경비인력 산출 근거 및 산식]

업무 구분	출국대기실	외국인보호실
근무인원	55명('23 예산안 기준)	206명('22.7.기준)
입실자 신분	일반승객	법위반자(강제퇴거 대상자)
주요 업무	송환대상자 입실 및 퇴실 간 이동 경비, 식사 지급, 승객 간 난동, 기타 민원대응	보호실 수용자 관리, 환자 이송 지원, 급식 지원, 보호시설 외곽 경비
경비 형태	3인 1조	2인 1조



- 근거: '22년 보호외국인 경비인력 총 206명이 일평균 911명(경비원 1인당 4.42명)의 보호외국인을 2인 1조 형태로 경비업무 수행 → 출국대기실 경비에 적용하기 위해 일평균 입실자에 대해 3인 1조 형태 경비인력 필요
- 산식: 출국대기실 필요 경비인력 = ('19년 입실자 수 × 코로나 19 회복비율 ÷ 365일) ÷ 4.42명(1인당 경비인원) × 1.5(보호경비 대비 추가소요 비율) = 약 58명



구 분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합 계
경비인력 소요	41명	8명	6명	55명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이와 같은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출국대기실 관련 이동 계호 주된 소요는 출국대기실 입실을 위한 송환대상외국인의 인솔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법무부는 해당 업무의 경우

4)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관리·운영 시 계호 관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3인 1조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계호대상자의 좌측, 우측, 후방에 각 1명씩의 인력이 이동 계호를 하여야 함을 감안하였으며, 법 개정 전 민간 인력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계호하였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계호 수요로 ① 여권 발급, ② 외부 진료, ③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및 신병 인도 요청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할 때 여전히 민간 항공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어 해당 업무의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출국대기실 입실 외에 발생하는 ① 여권 발급, ② 외부 진료, ③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출석요구 및 신병 인도 요청 등에 의한 계호 수요의 경우 외국인보호 실에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무형태가 유사한 외국인보호실과 같이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2023년도 출국대기실 입실자 기준, ② 출국대기실 경비 형태 관련 경비인력 기준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적용⁵⁾하는 경우, 2023년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소요 예산 규모는 29억 2,600만원으로,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내역사업에서 9억 2,9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예산안 수정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상용임금	498,240	보수: 18명 ×2,075천원×12월 = 448,200천원 명절휴가비: 18명 ×1,100천원 = 19,800천원 정액급식비: 18명 ×140천원×12월 = 30,240천원
	복리후생비	9,000	맞춤형복지비: 18명 ×500천원
	고용부담금	97,207	4대보험료 및 퇴직금: 498,240천원 ×19.51%
	피복비	7,200	18명 ×400천원
	일용임금	45,947	10명(5개공항)×9,620×209시간×12월×19%
	일반수용비	47,468	통역비: (입실자 74,121명× 0.701 기준) 16,731천원 수용경비: (입실자 74,121명× 0.701 기준) 30,737천원
	임차료	821,814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확장: 1,184m ² ×694,100원
	구호 및 교정비	889,095	매식비: 74,121명× 0.701 ×6,242원×3식×0.88 = 856,223천원 의료비·침구비: 203명× 0.701 ×231천원 = 32,872천원
공무직 근로자 운영	상용임금	415,200	보수: 15명×2,075천원×12월 = 373,500천원 명절휴가비: 15×1,100천원 = 16,500천원 정액급식비: 15명×140천원×12월 = 25,200천원
	복리후생비	7,500	맞춤형복지비: 15명×500천원
	고용부담금	81,005	4대보험료 및 퇴직금: 415,200천원×19.51%
	피복비	6,000	15명×400천원
합 계		2,925,676	

자료: 법무부

5) 코로나19 회복률 70.1% 및 출국대기실 경비 형태 관련 경비인력 기준은 2인 1조로 적용했다. 이 경우 경비인력은 약 33인으로, 기 고용한 15명을 제외하면 2023년도 고용 필요 인원은 18명이다.

가. 현 황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¹⁾은 각급 검찰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검찰청운영기본경비	12,946	14,307	14,087	14,352	265	1.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사업의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이동이 잦은 타 부처 및 세종시 이전 부처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에 대한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3년도 동 사업의 복리후생비(210-12목)에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이란 명목으로 6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이란 가족과 떨어져 홀로 타지의 검찰청에 근무하게 된 검사 및 검찰수사관²⁾이 월 8회 범위 내에서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철도로 이동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일부(코레일 및 SRT 철도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8-252

2) 지원대상은 단신부임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이며, 각각의 인원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원기준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모,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주거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경우로, 근무지 분리 판단기준은 행정구역상 시·도의 경계로 하며, 주거지와 근무지간 철도교통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근무지 분리 판단 기준: 시·도 기준]

권역	행정구역	권역	행정구역
서울·경기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권	강원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동 제도와 관련하여 단신부임하게 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대검찰청에 단신부임 회원번호를 신청하면 대검찰청은 해당 직원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매월 사용액의 50%를 업체(코레일 및 SRT)에 정산해 주고 있으며, 월 8회 이상 사용하거나 지정된 구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①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②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④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⑤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사적 용도의 교통비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 등 단신부임이 많은 부처 및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경우 이와 같은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를 편성·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방부 등의 부처에서도 법무부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전세객차 제도’의 경우 육로·철로·해상·항공수단으로 병

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수행하는 ‘수송활동 사업(2336-301)’에 편성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법무부와 달리 귀가 혹은 귀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출장·휴가·외출·외박·파견·전역·전속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동 시 편의를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이다.

또한 운행노선 및 좌석 편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방수송훈령」 제64조³⁾를 통하여 정기 군전세객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검찰청운영기본경비의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국방수송훈령」

제64조(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의 임무)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 통제하에 정기 군전세객차를 운영한다. <이하 생략>

가. 현 황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¹⁾은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등을 한 자(이하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범죄신고자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임시안전숙소 사업²⁾은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어 추가 피해 위험이 크지만 당장 거주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이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지정한 숙박업소에 임시거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2,967	12,121	11,710	12,429	719	6.1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333	333	333	333	0	0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498	2,955	2,955	3,364	409	13.8
임시안전숙소	627	682	682	960	278	4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법무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335-303

2) 코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5-306

나. 분석의견

검찰청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은 2020년 이후 이용자가 없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피해자 등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높다는 점과 경찰청 소관의 유사사업의 경우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유사사업에 통합하거나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3)에 따르면 검사 및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등을 말하는데, 법무부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각 1개소 등 총 4개소의 신변보호시설(이하 “안전가옥”)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안전가옥 개요]

구분	내용
근거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시설 현황	총 4개소,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에 각 1개소
대상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신고자 및 피해자, 친족 등
보호기간	사안에 따라 다름. 원칙적으로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 종료일까지 사용(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절차	범죄신고자 등이 안전가옥 사용을 원하는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안전가옥 제공 여부 결정(피해자 보호시설 관리운영 지침)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런데 동 안전가옥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2021년에는 1억 8,000만원, 2022년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률은 23.3%에서 32.8%로 저조한 수준이며, 2022년에도 8월말 기준 26.9%에 그치고 있다.

[최근 4년간 안전가옥 관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8월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신변보호업무위탁비	20	12	20	5	20	5	20	3
공공요금	10	1	10	2	10	3	10	2
임차료	150	46	150	35	150	34	100	30
합계	180	59	180	42	180	42	130	35
집행률	32.8		23.3		23.3		26.9	

자료: 법무부

안전가옥 관련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9년 3명에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⁴⁾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제도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4)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용자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안전가옥 이용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의 안전가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지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차가옥별 임차기간, 연도별 이용자 수, 임차료 집행내역]

구 분	임차기간	연도별 이용자 수/ 임차료 집행내역
A가옥 (서울중앙)	2023. 3. 18.(1년 단위 연장)	'19년(1명/1,200만원), '20년(0명/1,200만원) '21년(0명/1,200만원), '22년(0명/1,260만원)
B가옥 (인천지검)	2021. 6. 30.(2년 단위 연장)	'19년(1명/750만원), '20년(0명/720만원)
	2023. 6. 30.(1년 계약 연장)	'21년(0명/738만원), '22년(0명/510만원)
C가옥 (수원지검)	2023. 10. 8.(2년 단위 연장)	'19년(1명/840만원), '20년(0명/840만원)
		'21년(0명/840만원), '22년(0명/840만원)
E가옥 (부산지검)	2023. 8. 31.(1년 계약 연장)	'20년(0명/200만원), '21년(0명/600만원) '22년(0명/350만원)

자료: 법무부

따른 범죄신고자 등이 안전가옥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4년간 임차가옥 및 이용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임차가옥 수	이용자 수	임차료 예산액	임차료 집행액
2019	6	3	150	46
2020	4	0	150	35
2021	4	0	150	34
2022. 8월말	4	0	100	30

자료: 법무부

그러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인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임시안전숙소 사업(2023년 예산액 9억 6,000만원), ② 경찰청 소관의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사업⁵⁾(2023년 예산액 3,200만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수요 대비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⁶⁾이다.

[경찰청 소관 임시안전숙소 사업 및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사업 개요]

구분	임시안전숙소 사업				신변안전조치 사업			
'23예산안	9억 6,000만원				3,200만원			
집행내역 (백만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예산액	475	475	595	예산액	-	32	32
	집행액	575	475	627	집행액	-	32	32
	집행률	121	100	105	집행률	-	100	100

5) 코드: 일반회계 1231-317의 내역사업(피해자보호활동)의 세부내역

6)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 급증으로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21년 안전조치 대상자 중 신고자·목격자 인원수가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에 맞게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신고: 2020년 4,515건 → 2021년 14,509건, 데이트폭력 신고: 2020년 18,945건 → 2021년 57,297건, 신고자+목격자 수: 2020년 195명 → 2021년 310명)

구분	임시안전숙소 사업		신변안전조치 사업			
이용인원	구 분		'19	'20	'21	'22.8.
	임시안전숙소	건수(건)	5,027	4,668	6,569	3,602
		박수(박)	7,858	7,385	9,979	5,380
	신변안전조치	건수(건)	-	166	110	37
		박수(박)	-	414	544	194
근거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등			
대상	범죄피해 발생 후 추가 피해 우려 되거나 임시숙소 필요한 자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 자, 증인 등			
보호기간	기본 1일, 최대 5일(일부 예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내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검찰청과 경찰청의 신변보호 관련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동 사업의 수요가 주로 경찰청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청이 운영하는 안전가옥 관련 예산은 경찰청 소관의 유사사업에 통합⁷⁾하거나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경찰청의 사업을 통하여 해당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보완 사업의 작업장 확충 관련 공사 예산의 적정 편성 및 교도작업 사업 관련 노역집행률 개선 필요

가. 현 황

교도작업 사업¹⁾은 수행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55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시설보완 사업²⁾은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업장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시설장비의 신설·개량·확충과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6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교도작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도작업	53,683	55,213	54,962	55,455	493	0.8
시설보완	6,690	6,909	6,909	6,564	△345	△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형법」 제67조 및 제69조³⁾에 따르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535-300

2) 코드: 일반회계 1535-302

3)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수형자, 또는 벌금 및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자는 노역(정역⁴⁾)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는 수형자⁵⁾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도작업 사업에서 노역에 필요한 재료 등의 구입비용과 노역을 수행한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보완 사업에서 노역을 위한 작업장 신·증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교도작업 사업 및 시설보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보완 사업의 세부내역인 작업장 확충 사업은 매년 당해연도 준공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업장의 경우 공사의 지연으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노역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시설보완 사업 예산안에는 세부내역으로 작업장 확충 사업 예산 4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법무부는 동 예산으로 강원북부교도소 및 포항 교도소의 작업장에 대한 신·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4) 기존 「형법」의 경우 “정역”으로 규정하였으나 2020년 개정 이후 “노역(勞役)”으로 규정하였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023년 작업장 확충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 계획현황]

기관명	면적	작업장 수	작업예정인원	예산액
강원북부교도소	지상2층, 1,638㎡	3개	120명	3,100백만원
포항교도소	지상1층, 1,034㎡	1개	50명	1,700백만원
합 계		4개	170명	4,800백만원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작업장 확충 사업은 매년 당해연도 준공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부는 11개의 교도소에 18개의 작업장(작업인원 790명)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강원북부교도소를 제외하고 모두 준공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작업장 확충 공사에서 지연이 발생하면서 2019년부터 매년 이월 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시설보완 사업의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10,930	10,930	-	△215	10,715	10,005	93.4	515	195
2020	9,619	9,619	515	-	10,134	8,843	87.3	997	294
2021	8,909	8,909	997	-	9,906	6,690	67.5	2,742	473
2022	6,909	6,909	2,742	-	9,651	625	6.5	-	-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강릉교도소 등 일부 교도소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다음 해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강원북부교도소의 경우 공사의 지연으로 2022년으로 예산의 일부를 이월했다가 2022년에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단⁶⁾되었다.

6) 공사 중단 당시 공정률은 12%였다.

[연도별 작업장별 시설보완 사업 추진 내역]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기관명	작업장 수	작업인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준공일
2019	경북북부 제1교도소	4	240	3,012	2,496	515	2020.6.
2020	강릉교도소	1	70	1,900	787	997	2021.6.
2021	강원북부교	3	120	4,200	1,439	2,742	중단, '23년 재추진예정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은 특히 작업장의 규모가 큰 경우에 발생하였는데, 2023년도의 경우에도 강원북부교도소의 경우 작업장 수가 많고 예산액이 다른 작업장 확충 사업 대비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작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작업장 확충 및 작업적격자의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역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적극적인 노역 집행을 통해 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작업의무 수행자⁷⁾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작업이 부적격한 수행자를 제외한 모든 작업의무 수행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여야 한다. 노역은 형벌로서 징역 형에 부과되는 의무인 만큼 모든 작업적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업적격자로서 작업의무가 부과된 수행자 중 일부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5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2년 8월말 기준 작업적격자 20,072명 중 1,369명은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역집행률은 2022년 8월말 기준 93.2%로 전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작업의무) 수행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도별 수형자 노역 집행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8.
작업적격자(A)		23,182	23,522	22,396	21,665	20,072
작업자(B)	생산거실	19,554	20,087	19,141	18,469	17,210
	거실작업	1,856	1,847	1,802	1,749	1,493
미작업자(A-B)		1,772	1,588	1,453	1,447	1,369
노역집행률(B/A)		92.4	93.2	93.5	93.3	93.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노역작업자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 및 코로나19의 영향⁸⁾ 등으로 인해 일부 미작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작업장 확충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 결과 총 20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878명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였다.

[2018년 이후 작업장 확충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기관명	작업장 수	작업인원	집행액
2018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	53	1,080
	상주교도소	1	35	899
	경북직업훈련교도소	1	20	486
	순천교도소	3	100	1,689
2019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4	240	3,011
	정읍교도소	1	50	969
	청주여자교도소	2	70	1,514
	장흥교도소	1	40	1,107
2020년	천안교도소	2	50	1,917
	장흥교도소	1	70	1,223
	군산교도소	1	50	1,979
	강릉교도소	1	70	1,784

8)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업중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기악화로 인하여 기업의 주문도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기관명	작업장 수	작업인원	집행액
2021년	천안개방교도소	1	20	1,900
	여주교도소	1	10	835
합 계		21	878	20,393

주: 집행액은 최종 완공 집행액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18년 대비 2021년 작업자는 오히려 1,192명이 감소하였고 노역집행률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업장 부족으로 인해 노역집행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설명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노역집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노역집행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노역집행을 통하여 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⁹⁾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9)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작업과 병행하여 외부 통근 작업 등 교정시설 외 작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 현 황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500만원이 증액된 6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률구조	53,516	62,402	62,402	63,202	800	1.3
대한법률구조공단	51,560	60,429	60,429	61,234	805	1.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²⁾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³⁾에 따라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지부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의 내역사업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

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정위원회 지원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안	예산 세부 내역
인건비	2,527	42명(사무국장 6명, 심사관 12명, 조사관 18명 등)
경상비	127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비	753	조정활동비, 청사취득 및 관리, 업무전산화비, 기관운영경비, 조정제도 조사연구, 법제몽 활동비 등
합계	3,407	

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업은 2017~2018년에 별도 세부사업이었으며, 2019년부터 법률구조 사업에 통합 편성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나. 분석의견

법무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2020. 7. 31.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뿐만 아니라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③ 한국부동산원⁴⁾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각 소관별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근거법률에는 “한국감정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근거법률인 「한국감정원법」이 2020년 6월 9일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7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한 법무부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5,844	7,134	7,134	7,134	-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조정서 정본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⁵⁾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증인의 공정증서⁶⁾의 경우에도 해당

5)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증서의 작성에 대해서 국가사무로 관리되고 있는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을 작성하는 직무도 국가사무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⁷⁾도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 작성 등의 조정 업무의 경우 국가사무로,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가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동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⁸⁾

6) 집행권원은 본래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부여되는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그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그 중 제4호는 ‘공증인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판결의 효력 없이도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2조에 따라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제10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12.13. 선고 2018두41907판결)

8) 다만, 법무부는 조정서 정본 작성 직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이라도, 동일한 성질의 사업을 각 부처에서 다른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1

현황

법제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법제처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440억 3,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억 8,400만원(2.5%) 증가하였다.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291	43,194	42,952	44,036	1,084	2.5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한편, 법제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고, ② 「행정기본법」이 제정('21.3.23.)됨에 따라, 개별 행정법령 정비, 입법영향분석 실시 등 입법 후속조치 실행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업은 대면회의 전환 및 참석인원 확대로 증액했으나, 과거 집행실적, 낙찰차액 등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의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의 채택률 및 반영률이 낮고 그 내용도 용어 정비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행정법제 혁신, 법제교육 등이 있다.

① 법제교육 및 법제실무인력육성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고, ② 행정법제 혁신 사업은 국정과제(‘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등이 증액되었으며, ③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은 해외 법령 완역률을 높이고 고품질 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령 번역 용역 예산 등이 반영되었다.

[법제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법제교육 및 법제실무인력육성	1,221	1,182	1,470	288	24.4
	행정법제 혁신	470	459	730	271	59.0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5	855	1,116	261	30.5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2.) 주요 증액사업은 2023년도 예산 증액 규모 상위 3개 사업

자료: 법제처

II

개별 사업 분석

1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황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각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법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국법제기관교류	240	277	277	253	△24	△8.7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102	102	102	127	25	24.5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업은 대면회의 전환 및 참석인원 확대로 증액했으나, 과거 집행실적, 낙찰차액 등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의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국내외 인사초청, 행사장 임차 등 회의 전반을 용역으로 수행하기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34-301

때문에, 일부 경상경비 외에 예산 대부분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하였다. 법제처는 코로나 완화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했던 회의를 일부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사 초청비(6명)와 참석인원 확대(50명 → 350여명)에 따른 임차료, 자료 추가 인쇄 등을 위한 추가 소요 2,5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목)에 증액 편성하였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일반수용비 (210-01)	- 물품구입비 등: 5,400천원	5,400
일반용역비 (210-14)	- 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용역비: 117,000천원 · 117,000천원×1회=117,000천원	117,000
국내여비 (220-01)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관련 국내여비: 1,600천원 · (20천원+20천원+40천원)×20회=1,600천원	1,600
사업추진비 (240-01)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경비: 3,000천원 · (15천원×200명)=3,000천원	3,000
합 계		127,000

자료: 법제처

그런데 과거 집행실적을 살펴볼 때, 법제처가 산출한 2,500만원의 증액 소요에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국인사 초청비는 대면으로 진행했던 2019년에 6명²⁾을 대상으로 약 790만원이 집행되었다. 최근 3개년간 외국인사 초청비(온라인)로 매년 집행된 150만원과 2023년에 계획된 초청인원 6명을 감안할 경우 최근 항공료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 예산 소요는 1,00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행사장 임차료는 물가상승률³⁾을 고려하더라도 약 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정책국장, 태국 내각사무처 외국법부 과장, 베트남 법무부 민법 및 경제법 국 부국장, 베트남 후에 개발연구소장 등

3) 법제처는 '19년도 임차료와 비교시 '22년 대비 100%증가(15백만원→30백만원)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행사의 대면 개최로 인한 참석인원 확대(50명→350명)에 따른 자료집 제작비 증가에 따른 인쇄비 등은 최근 3년간 일반용역비(행사)의 낙찰률이 92~94% 수준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법제 전문회 회의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	용역계약액	집행내역	집행금액
2019	65,336	직접집행	외국인사 및 수행인원(6명) 초청비	7,906
			국내인사 7명 초청비	2,500
			행사장 임차료	15,450
			오만찬 비용	5,000
			통·번역비	4,568
			기타 비용	29,896
2020	92,000	85,250	외국인사 4명 초청비(온라인)	1,500
			국내인사 3명 초청비	1,500
			행사장 임차료(만찬 포함)	20,000
			음향무대 설치비	20,595
			통·번역비	7,600
			기타 비용	34,055
2021	92,000	88,880	외국인사 5명 초청비(온라인)	1,500
			국내인사 5명 초청비	1,500
			행사장 임차료(만찬 포함)	26,434
			음향무대 설치비	17,620
			통·번역비	6,600
			기타 비용	35,226
2022.9	92,000	89,430	외국인사 7명 초청비(온라인)	2,100
			국내인사 5명 초청비	1,500
			행사장 임차료	24,700
			음향무대 설치비	18,620
			통·번역비	9,200
			기타 비용	33,310

자료: 법제처

따라서 아시아법제 전문가회의는 2023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비대면→대면+비대면)되었지만 과거 집행실적, 낙찰차액 등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의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이하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¹⁾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입법예고안을 대상으로 쉬운 문장 및 용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법제처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부처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법령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제정비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제정비	1,300	1,521	1,493	1,380	△141	△9.3
알기 쉬운 법제 구축	732	753	740	682	△58	△7.8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121	153	153	153	-	-

주: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의 채택률 및 반영률이 낮고 그 내용도 용어 정비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국민에게 입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개선의견을 법령에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

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제처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어려운 법률용어나 문장을 정비하는 수준이고 국민참여단 제출의견에 대한 채택률 및 반영률은 0.5%~2.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주요 정비 사례]

소관기관	법령명	입법예고 용어	정비 용어
기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수(複數)에 미달하여	2인 이상이 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국세에 만족시킬 수 있다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육안으로 실시	직접 눈으로 확인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0착 이상	20벌 이상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전전전전년도부터 전전전년도까지	전 4개년도부터 전 2개년도까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사료빈	사료보관통 (사료빈)

자료: 법제처

구체적으로 동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2021년 입법예고안 568건에 대하여 국민참여단에게 9,419건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각 검토 건당 평균 2.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총 23,80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현재 법령에 반영된 것은 124건으로 확인된다.

[법령안 새로쓰기 사업 제출 의견 현황]

연도	참여 인원	검토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수(A)	위탁기관 선정인수	법제처 채택 의견 수(B)	B/A (%)	반영 의견 수(C)	C/A (%)
2019	505	12,274	9,481	1,095	227	2.4	180	1.9
2020	150	4,624	24,178	507	163	0.7	130	0.5
2021	165	9,419	23,805	602	207	0.9	124	0.5
2022.9	170	5,910	26,873	887	296	1.1	추진중	-

자료: 법제처

이와 같이 채택률과 반영률이 저조한 이유는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발간하여 각 부처가 법령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법령용어 사후 정비 사업을 통해 2006년 이후 상당한 용어들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강의를 듣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책자를 참고하는 정도²⁾로는 타 법률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법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사업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은 사업실적 및 효과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지속여부 검토를 포함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입법참여제도인 법령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참여단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탁기관 검토자가 신규 모집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책자, 우수사례집 및 온라인 강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현 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176억 8,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0억 9,400만원 감소하였다.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945	19,999	19,777	17,683	△2,094	△10.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수사활동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과 공소유지 등 공판활동을 위한 ‘공판활동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수사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및 민간위원 수당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개최실적과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형사보상금을 편성하였는데,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3년도 사업은 신규 사업은 없으며,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이다.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 운영을 위한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가 각각 편성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²⁾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887	1,887	1,925	38	2.0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828	7,816	8,161	345	4.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598	2,553	2,697	144	5.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가. 현 황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¹⁾은 범죄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사역량 강화 지원과 공수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9,300만원 감액된 1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2,528	2,363	1,970	△393	△16.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 수사관련 위원회 비용 과다 계상

가.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 및 기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등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 편성하고 2023년도 예산안은 2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공수처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 및 민간위원 수당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개최실적과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공수처의 수사 관련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산정내역	예산액
1	수사심의위원회	가. 일반수용비: 49,500 (300,000원*11명*15회) 나. 사업추진비: 4,950 (30,000원*11명*15회)	54,450
2	수사자문단	가. 일반수용비: 67,500 (300,000원*15명*15회) 나. 사업추진비: 6,750 (30,000원*15명*15회)	74,250
3	영장심의위원회	가. 일반수용비: 40,500 (300,000원*9명*15회) 나. 사업추진비: 4,050 (30,000원*9명*15회)	44,550
4	공보심의협의회	가. 일반수용비: 66,000 (300,000원*11명*20회) 나. 사업추진비: 6,600 (30,000원*11명*20회)	72,600
5	감찰위원회	가. 일반수용비: 4,200 (300,000원*7명*2회) 나. 사업추진비: 420 (30,000원*7명*2회)	4,620
6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	가. 일반수용비: 6,300 (300,000원*3명*7회) 나. 사업추진비: 630 (30,000원*3명*7회)	6,930
계			257,400

자료: 공수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사심의위원회 및 수사자문단은 처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는 임의적 절차이고 2021년과 2022년 9월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를 감안할 때 해당 위원회들의 개최 횟수를 15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위원회	개최실적			비고
	2021	2022.9	2023(안)	
수사심의위원회	1	3	15	처장요청으로 소집
수사자문단	1	3	15	처장요청으로 소집
영장심의위원회	1	-	15	법에 근거
공보심의협의회	6	5	20	
감찰위원회	-	1	2	2022년 구성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1	1	7	대통령령에 근거

주: 영장심의위원회는 「공수처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설치되고,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됨.

자료: 공수처

또한, 공수처는 모든 회의에 민간위원 정원 모두 참석한다고 가정하고 1인당 지급액도 일률적으로 참석비(최대 20만원)와 사전자료수집 또는 회의안전 검토비용(10만원)을 합쳐 30만원으로 계상²⁾하였으나, 회의마다 모든 위원이 참석하고 그 위원들 모두 사전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위원회 개최 횟수 및 민간위원 수당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개최실적과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98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2 형사보상금 지급 근거 미비

형사보상금은 수사일반 사업 내에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3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형사보상금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 내역
형사보상금	■ 2건*56.5백만원 = 113백만원

자료: 공수처

나. 분석의견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이하 “헌법”이라 한다)³⁾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⁴⁾에 따라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억울하게 구금,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느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형사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인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3)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보상결정을 받은 후 보상을 결정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관련 규정]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보상금의 신청대상기관이나 지급기관에 법원과 검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수처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에서도 형사보상금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준용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⁵⁾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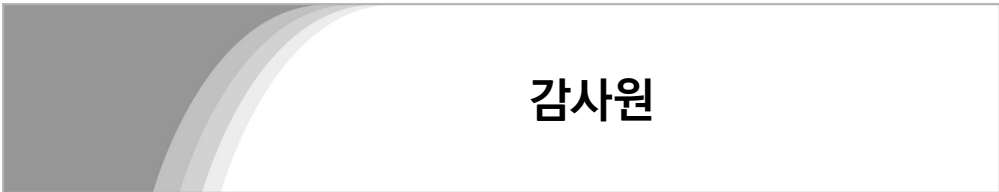
「헌법」 제28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 청구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및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형사보상법」이나 「공수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형사보상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1.11.26.)」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하여 헌법상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공수처법」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감사원

1

현황

감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00만원(10.8%) 감소하였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27	716	716	639	△77	△1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377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200만원(1.1%) 증가하였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6,318	136,307	135,221	137,739	1,432	1.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감사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감사활동경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등의 사업이 감액된 반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증액되었다.

2023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감사교육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감사관리 사업과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이 유사·중복되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 사업으로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한 예산소요가 반영되었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1,000만원 증액(60.3%)된 4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감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	2,836	2,836	4,546	1,710	60.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II

개별 사업 분석

1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의 유사중복에 따른 업무통합 필요

가. 현 황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¹⁾은 개발도상국 내 감사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감사제도를 연수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예산대비 1억원 증액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148	297	197	297	100	50.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기존 감사교육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감사 관리 사업과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이 유사·중복되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은 2021년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몽골·라오스·몰디브·르완다 등 4개 국가의 감사원 직원을 초청²⁾하여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 시스템 및 감사기법을 전파하는 사업이며, 현재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5-323

2)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연수로 대체되어 실시되었다.

감사원(감사교육원³⁾)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및 2022년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억 4,700만원이었다. 2022년도의 경우 2회 추경 때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현액 1억 9,700만원 중 3,800만원(2022년 8월 기준)이 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8월 감사기구 역량강화(ODA)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2회추경							
2021	297	297	0	±60	0	297	150	0	147
2022	297	(△100)197	0	±26	0	197	38	0	0

자료: 감사원

그런데, 감사원(감사교육원)은 기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위탁을 받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공감사 관리과정 사업⁵⁾을 수행하고 있는 바, 양 사업은 사업목적, 연수내용 및 연수과정 등이 유사하고, 연수 주체가 감사원(감사교육원)으로 동일하므로, 재원을 달리하여 유사 사업을 2개 부처에서 중복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사원(감사교육원)의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

3) 「감사원법」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4) [2021년 및 2022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사업실적]

2021 (신규)	· 몽골 등 4개국 대상 5개 연수사업 중 수원국 요청으로 취소된 베트남(감찰원) 과정을 제외한 몽골 등 나머지 4개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실시 완료
2022	· 탄자니아 등 4개국 대상 4개 연수사업 중 필리핀 과정(7월)과 탄자니아 과정(8월)을 실시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 완료 - 나머지 2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터키(9월), 네팔(10월, 일정 협의 중) 순으로 추진 예정

자료: 감사원 자료

5)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감사관리과정은 다년도 사업이다. 최근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1차 연수에 베트남 1개국 16명, 2차 연수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 18명이 초청연수를 받았고, 2020년은 르완다 1개국 13명이 온라인 연수를 받았으며, 2021년은 탄자니아 1개국 15명이 온라인 연수를 받았다.

의 공공감사 관리과정 사업에 통합함으로써 유사중복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ODA) 및 공공감사 관리 사업(ODA) 비교(2021년 기준)]

구 분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2021년 기준, 단년도)		공공감사 관리 사업(2019~2021년 다년도)	
대상	몽골, 라오스, 몰디브, 르완다 등		탄자니아, 르완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방법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진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진	
예산	1억 4,800만원		3,198만원 ¹⁾	
기간	7일(초청 연수시 14일)		9일~21일	
교육 대상	최고감사기구의 관리자급 직원		각국 최고감사기구 또는 중앙부처 자체감사기구 소속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육 과정 프로그램	Module I 한국의 감사제도 소개	· 한국 감사원/감사교육원 소개 · 한국의 공공감사체계 · 경제발전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	Module I 한국의 감사제도 소개	· 한국 감사원/감사교육원 소개 · 한국의 공공감사체계 · 경제발전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
	Module II 감사원의 감사지원 시스템 및 감사활동	· 감사처리 절차 및 품질관리 · 한국의 감사청구제도 · 한국의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 컨설팅제도 · 성과감사의 이해 및 주요사례 · IT기반감사시스템(BARON, BEST)	Module II 한국의 감사지원 시스템 및 감사활동	· 감사처리 절차 및 품질관리 · 한국의 감사청구제도 · 한국의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제도 · 한국의 성과감사 특징 및 사례 · IT기반감사시스템(BARON, BEST) · 포렌식 감사기법 등
	Module III 감사 제도 (감사 관리자 특화과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사전략 · 감사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한국 감사원의 감사인력 구성과 조직역량 관리 방안 · 한국 감사원의 내부통제 관리제도 · 감사관리자의 분야별 감사전략 (SOC, 환경 분야) · 국가별 감사체계 토론 등	Module III 수원국의 감사활동	· 국가별 보고서 발표 · Action Plan 작성방법 강의 · Action Plan 작성·발표
	Module IV 수원국의 감사활동	· 국가별 보고서 발표 · 분야별 우수감사사례 발표		

주: 1) 공공감사관리과정 예산은 2019년 9,700만원, 2020년 5,879만원, 2021년 3,198만원, 2022년 4,511만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예산안에는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자료: 감사원 및 KOICA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법원

1

현황

가. 총수입 · 총지출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 및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23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79억원(27.0%) 증가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681억원, 등기특별회계 3,644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09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81,048	703,970	703,970	932,516	228,546	32.5
- 일반회계	405,499	433,742	433,742	568,080	134,338	31.0
- 등기특별회계	275,549	270,228	270,228	364,436	94,208	34.9
기 금	84,549	101,596	101,596	90,906	△10,690	△10.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84,549	101,596	101,596	90,906	△10,690	△10.8
합 계	765,597	805,566	805,566	1,023,422	217,856	27.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81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13억원(3.0%) 증가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7,690억원, 등기특별회계 2,376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50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885,854	1,950,903	1,944,976	2,006,564	61,588	3.2
- 일반회계	1,653,500	1,717,789	1,712,674	1,768,956	56,282	3.3
- 등기특별회계	232,354	233,114	232,302	237,608	5,306	2.3
기 금	67,138	75,308	75,308	75,004	△304	△0.4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7,138	75,308	75,308	75,004	△304	△0.4
합 계	1,952,992	2,026,211	2,020,284	2,081,568	61,284	3.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세입 · 세출예산안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1,68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791억원(48.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83억원, 등기특별회계 4,303억원이다.

[2023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34,680	483,235	484,047	738,291	254,244	52.5
특별회계	353,446	305,403	305,403	430,263	124,860	40.9
합 계	788,126	788,638	789,450	1,168,554	379,104	4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1,99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811억원(8.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690억원, 등기특별회계 4,303억원이다.

[2023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53,500	1,717,789	1,712,674	1,768,956	56,282	3.3
특별회계	279,761	305,403	305,403	430,263	124,860	40.9
합 계	1,933,261	2,023,192	2,018,077	2,199,219	181,142	8.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대법원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993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167억원(9.1%) 증가하였다.

[2023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23,597	182,595	182,595	199,285	16,69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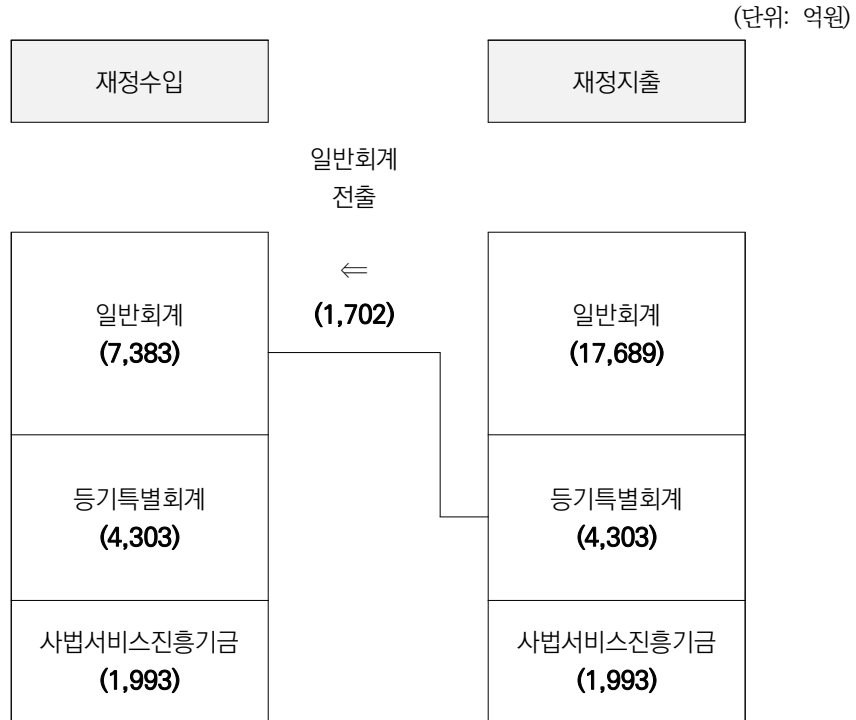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1,702억원이 전출된다.



주: 총계기준
자료: 대법원

2023년도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4. 10. 20. 시행)에 따른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도입 이전 형사 사건기록 전자화 사업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2023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에 신규 판사 임용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력 증원 수치, 판사 결원을, 연례적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신규판사 임용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신부임 근무자에 대한 철도운임 지원 경비는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실제 집행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3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종이문서 기반 형사사법절차를 전자문서 기반 전자소송체제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3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3,829
합 계		3,829

자료: 대법원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부실등기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등기체계의 공신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등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차별 소요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추경예산 대비 57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등기특별회계 (1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1,600	11,540	17,362	5,762	49.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대법원

II

개별 사업 분석

1

판사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법관 인건비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법관 인건비 사업¹⁾은 각급 법원의 판사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6억 2,100만원이 증액된 4,04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일반 인건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인건비	1,152,367	1,186,105	1,184,329	1,228,315	42,210	3.6
법관 인건비	350,259	384,305	383,912	404,533	20,621	5.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대법원

참고로,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²⁾에 따라 3,214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판사의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³⁾한 상태이다.

판사의 정원은 2016년 2,954명, 2017년 3,034명(전년대비 80명 증원), 2018년 3,124명(전년대비 90명 증원), 2019년 3,214명(전년대비 90명 증원)으로, 2019년 이후 판사 증원은 없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01-151의 내역사업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3) 대법원은 법무부에 2022년 8월 5일에 제출하였고, 국회 제출은 2022년 9월 30일 계획 중에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7년간 판사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2022년 8월
정원	2,954	3,034(+80)	3,124(+90)	3,214(+90)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에 신규 판사 임용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사 증원 수치, 판사 결원율, 연례 적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신규판사 임용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인건비 사업 중 법관에 대한 인건비 주요 항목 세부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봉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를 3,23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신규 판사 50명분으로 봉급,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의 6개월 치를 편성하였다.

[2023년도 법관에 대한 인건비 주요 항목 세부산출 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보수 (110-01)	봉급	① 6,601,933원×3,236명×12개월×1.03	≍
		② 6,601,933원×50명×6개월×1.03	266,097백만원
	성과 상여금	6,457,500원×3,236명×1개월×1.10	≍
			22,986백만원
	명절 휴가비	① 6,601,933원×3,236명×0.6×2개월	≍
		② 6,601,933원×50명×0.6×1개월	25,835백만원
그 밖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에 86,560백만원 책정되어 있음	
연가보상비(110-05)		① 6,601,933원×3,236명×5×0.86×0.033	≍ 3,055백만원
		② 6,601,933원×50명×2.5×0.86×0.033	

주: 1. 세부산출내역의 ②항목은 '23년 예상 법관 정원 증원분에 관한 것임

자료: 대법원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명세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 인원 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규정된 판사의 정원(3,214명)에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 중 연수원 인건비 산출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22명)을 합하여 산정(3,236명)한 것이며, 신규 50명의 분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에 따른 증원(370명 증원)을 예상하고 2023년도에 50명의 순차적 충원을 감안한 편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일부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최근 4년간 법관 인건비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85억 9,400만원, 2020년 491억 1,400만원, 2021년 378억 2,900만원 등 매년 판사 인건비는 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법관 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9	326,278	317,684	97.4	8,594
2020	376,112	326,998	86.9	49,114
2021	388,088	350,259	90.3	37,829
2022.8	383,912	246,322	64.2	-

자료: 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판사 결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62명(8.2%), 2020년 178명(5.5%), 2021년 113명(3.5%)으로 결원율이 2~8%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자도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판사 정원, 퇴직 및 결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0월
정원	3,034	3,124	3,214	3,214	3,214	3,214
퇴직 ¹⁾	72	73	53	73	93	88
결원(결원율)	79(2.6)	202(6.5)	262(8.2)	178(5.5)	113(3.5)	62(1.9)

주: 1)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등을 의미

자료: 대법원

게다가, 최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⁴⁾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⁵⁾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있다.

이렇게 법조일원화제도⁶⁾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법조경력자 중에 법관의 대규모 충원이 어렵고, 매해 충원 규모도 일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법관 신규 임용을 살펴보면, 2017년 161명, 2018년 38명, 2019년 82명, 2020년 158명, 2021년 157명으로 매년 신규 임용 판사의 규모는 일정하지 않으며 최저 38명, 최대가 161명으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7~2022.10월 판사 신규 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0.
신규임용	161	38	82	158	157	1391)

주: 1) 대법원은 2022년 2월에 4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되었고, 2022년 10월에 135명이 임명동의를 할 예정으로, 2022년 신규임용은 139명이라는 설명

자료: 대법원

4)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원조직법」 제42제2항에 따라 판사를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로, 동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0861호)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5) 판사 임용은 [법원조직법] 제42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0861호)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6) 참고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살펴보면, 법률서면작성,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인사위원회 중간심사, 최종면접, 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및 대법관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판사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최근 판사의 결원율, 연례적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충당 가능여부 및 신규 판사 임용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본부 기본경비 사업¹⁾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3,900만원이 증액된 77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본부 기본경비	70,859	75,522	74,684	77,361	1,839	2.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본부 기본경비 사업의 복리후생비로 단신부임한 직원이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 매월 8회의 범위 내에서 철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이동이 잦은 타 부처 및 세종시 이전 부처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에 대한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의 복리후생비(210-12목)에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이란 명목으로 5억원²⁾을 편성하고 있다.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이란 가족과 떨어져 홀로 타지의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된 직원이 월 8회 범위 내에서 지정된 구간(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철도로 이동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일부(코레일 철도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1-250

2)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사업의 2021년 예산 5억원 중 3억 1,977만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 8월 기준 예산 5억원 중 3억 5,648만원이 집행되었다.

지원기준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주거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경우로, 근무지 분리 판단기준은 권역 외 이동으로 제한하며, 주거지와 근무지 간 철도교통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원거리간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판사 및 일반직원이며, 주로 판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근무지 분리 판단 기준: 권역 기준]

권역	행정구역	권역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권	강원도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북권	충청북도	전북권	전라북도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동 제도와 관련하여 단신부임하게 된 직원이 대법원에 단신부임 회원번호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해당 직원의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매월 사용액의 50%를 업체(코레일)에 정산해 주고 있으며, 월 8회 이상 사용하거나 지정된 구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①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②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④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⑤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사적 용도의 교통비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 등 단신부임이 많은 부처 및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경우 이와 같은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를 편성·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국방부 등의 부처에서도 대법원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 전세객차 제도’의 경우 육로·철로·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를 완비하기 위

해 수행하는 ‘수송활동 사업(2336-301)’에 편성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대법원과 달리 귀가 혹은 귀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출장, 휴가, 외출, 외박, 파견, 전역, 전속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동 시 편의를 보장하고자 지원되는 제도이다.

또한 운행노선 및 좌석 편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방수송훈령」 제64조³⁾를 통하여 정기 군전세객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부 기본경비의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는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국방수송훈령」

제64조(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의 임무) 철도수송지원대 및 호송대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임무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수송은 계획수송과 미계획수송으로 구분하며 국수사 통제하에 정기 군전세객차를 운영한다. <이하 생략>

가. 현 황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¹⁾은 등기선례요지집, 등기선례해설집, 상업등기실무 등의 업무자료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등기업무 운영지원	24,447	24,960	24,720	23,986	△974	△3.9
각종 업무자료 발간	10	253	253	253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대법원

나. 검토의견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실제 집행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억 5,3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4.6%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36.8%, 2019년 18.5%, 2020년부터 2021년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발간내역을 보면, 부동산등기실무만 매년 발간되고 있고, 상업등기실무 및 상업등기기록례집은 2018년 이후 발간된 적이 없다.

부동산등기실무 발간부수도 2017년 2,100부에서 2019년 1,872부, 2020년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등기특별회계 7032-311의 내역사업

1,722부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부동산등기실무 1,380부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과 같이 부동산등기실무(I·II·III)을 전면 개정한 해가 아니라면 기존 책자를 일부 추가 발간하는 정도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전자책자로 발간하는 업무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발간 관련 집행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017~2022년 8월 각종 업무자료 발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 집행			세부 발간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7	253,000	138,023	54.6	부동산등기실무(2,100부) 상업등기실무(30,000부)
2018	253,000	93,001	36.8	부동산등기실무(2,100부) 상업등기기록레지(1,950부) 민법법인등기실무(15,000부)
2019	253,000	46,922	18.5	부동산등기실무(1,872부) 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1,500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600부) 부동산등기기록레지(2,250부)
2020	253,000	20,379	8.1	부동산등기실무(1,722부) 기타등기실무(850부)
2021	253,000	9,889	3.9	부동산등기실무(1,380부)
2022. 8.	253,000	13,459	5.3	부동산등기실무(699부)

자료: 대법원

또한, 동 사업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지적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²⁾

이에 대법원은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2023년 구체적인 발간 계획, 집행실적 및 전자책자 전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예산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대법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대법원은 필수적인 업무자료 발간 사업을 개선하여 예산 편성 시 전면 개정판 발간에 맞추어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주의)를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

1

현황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3,9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억 4,100만원(△91.9%) 감소하였다.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6	480	480	39	△441	△91.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58억 9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9억 4,700만원(5.6%) 증가하였다.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802	53,145	52,862	55,809	2,947	5.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2023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노후화 된 청사 보일러 및 전력감시시스템 교체 등 업무 인프라 개선 예산이 편성되었고, ② 지능형 헌법 재판서비스 3단계 사업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정보화 예산이 반영되었다.

2023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은 법률·판례 등의 번역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번역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대법원·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기관별로 별도의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방지를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직접 시스템 개발 시에도 다른 기관과 함께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2023년도 신규사업 및 2023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다.

헌법재판소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헌법재판정보화 사업¹⁾은 헌법재판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심판사건처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헌법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2,400만원 증액된 8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헌법재판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헌법재판정보화	6,421	6,618	6,618	8,242	1,624	24.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 자동번역시스템 개발은 법률·판례 등의 번역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 번역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대법원·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기관 별로 별도의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방지를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직접 시스템 개발 시에도 공동으로 개발 가능한 부분은 다른 기관과 함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5-500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은 헌법재판소에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3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자동번역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 5억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번역 서비스는 헌법재판소에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에 자동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번역엔진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 1억 7,500만원과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비 3억 6,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자동 번역기 도입예산 세부내역]

번역 엔진 도입: 1억 5,700만원

번역지원도구 도입: 1,750만원

학습데이터 구축, API 연동 UI 등 커스터마이징 개발: 3억 6,200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동번역 시스템은 헌법연구관들이 조사업무 과정에서 번역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번역된 자료에 존재하는 다양한 오류를 확인·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판례 등의 번역을 수행하는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번역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경우 개발비용 등이 중복 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번역시스템을 개발·구축하면서, 기관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만 개별적으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동일한 법령·판례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용어·표현·해석으로 번역되는 등 번역 결과물의 통일성 저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관 간 번역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022년 9월말 기준 행정기관 등의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 중이고, 대법원, 법제처 등은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자동번역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번역시스템을 개발·구축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

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번역시스템과 연계하거나,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을 검토·추진 중인 다른 수요기관들과 함께 개발 가능한 부분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협의체 등을 통해 자동번역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별 번역 결과물의 편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자동번역 시스템 도입·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자동번역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다른 기관과 함께 개발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중복 개발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87-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